

변경대비표

1. 정정대상 집합투자기구:

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형 명칭)	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한국밸류10년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70315
C	BU433
C-E	BU434
S-R	ET296

2. 주요 정정 내용:

① 투자설명서:

-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변경 / 이익분배 조항 변경

② 신탁계약서

-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변경 / 이익분배 조항 변경

3. 정정대상 서류: 투자설명서, 신탁계약서

4. 효력발생일: 2026.10.28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요구 ·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아니오	신설	신설	투자신탁의 회계기간 변경 및 이익분배 조항 변경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	아니오	투자신탁의 회계기간 변경 / 이익분배 조항 변경	<p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<u>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 <p>※ (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) 2017년 3월 19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년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<p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 (이하 삭제)</p>

[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				
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	아니오	투자신탁의 회계기간 변경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시에는 <u>최초설정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그 이후에는 매 1년간으로 한다.</u> 다만,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1. <u>최초설정시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</u> 2. 2번째 회계기간부터 19번째 회계기간까지: <u>2008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</u> 3. 20번째 회계기간: <u>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29일까지</u> 4. 20번째 회계기간 경과 후: <u>2026년 10월 30일부터 매 1년간</u>
제33조(이익분배)	아니오	이익분배 조항 변경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.</u> 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2. <u>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<u>(삭제)</u>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. <u>(삭제)</u>
부칙	아니오	-	<신설>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